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3078호

나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다. 제안일자 : 2022년 1월 21일

라. 회부일자 : 2022년 1월 25일

2. 제안이유

○ 자치구에 시 권한을 일부 위임하고,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를 새롭게 분장함으로써 자치구에 위임하는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「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」 제5조 제1항의 서울시 지정 금연구역(서울·청계·광화문 광장,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총 389개소)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 사무를 자치구로 위임함(안 별표 ▢ 시민건강국).

나. 택시정책과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무를 물류정책과로 업무 변경함(안 별표 ▢ 도시교통실).

다. 도시계획과 사무를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과로 업무 변경함 (안 별표 ▢ 균형발전본부).

라. 물재생계획과 일부 사무를 물순환정책과로 업무 변경함

(안 별표 ▢ 물순환안전국).

4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가. 개정안의 개요

○ 개정안은 서울시 지정 금연구역의 단속업무를 자치구로 위임하고,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의 업무분장 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되었음.

나. 서울시 금연구역 과태료 부과·징수 사무의 위임

○ 「국민건강증진법」은 국회, 정부, 지방자치단체 등의 청사, 학교, 보건소, 어린이집 등의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(제9조 제4항),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다수가 모이거나 오고 가는 관할 구역의 일정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(제9조 제7항).

○ 이에 따라 서울시는 「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조례」(이하 "금연조례")를 통해 도시공원, 지하철역 출입구 부근, 중앙차로 버스정류소, 서울·청계·광화문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행위에 대해 과태료(10만원 이하)를 부과하고 있음.

○ 현재 서울시가 지정한 금연구역은 1,954개소로, 이중 지하철역 출입구 부근의 단속권한은 2016년 시장방침(지하철역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 계획)에 따라 자치구로 위임되었고, 도시공원은 금연조례(제11조)[1]에

따라 공원녹지사업소로 단속권한이 위임되었으나, 「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」에는 적기에 반영되지 않았음.

<서울시 금연구역 지정 및 단속 현황>

연번	구 분	개소수	최초 지정일	단속주체
1	서울·청계·광화문 광장	3	'11.3.	서울시
2	버스정류소(중앙차로)	389	'11.12.	
3	도시공원	24	'11.9.	공원녹지사업소(위임)
4	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	1,538	'16.5.	관할 자치구 (위임)
합 계		1,954		

○ 서울시는 현재 금연구역 중 중앙차로 버스정류소, 서울·청계·광화문 광장에 대해서만 단속반을 운영 중이며, 정책방향을 단속 규제보다 사전예방과 계도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단속인력을 감축하고(2020년 10명→2021년 1명) 예산을 전액 삭감할 예정임(2021년 546만원).

○ 한편, 25개 자치구는 「국민건강증진법」과 자체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(총 288,961개, 법 271,885개·조례 17,076개)에 대해 상시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(2021년말 기준 단속실적 35,205회, 단속인력 397명).

○ 개정안은 서울시 지정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 사무를 자치구로 위임하는 것으로, 금연구역 단속업무를 일원화하여 흡연행위 단속과 계도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됨.

---

1)「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」제11조(사무의 위임) 시장은 제5조제1항제1호의 도시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부과·징수 사무를 「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」에 따라 해당 공원을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보조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.

○ 다만, 도시공원의 경우는 금연조례에 따라 공원녹지사업소에 별도 위임되어 있으므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수정이 필요함.

<수정의견 조문대비표>

<table>
<tr><td>개정안</td><td>▢ 시민건강국
<table>
<tr><td>주관부서</td><td>사 무 명</td><td>근거법령</td><td>수임기관</td></tr>
<tr><td>보건의료정책과</td><td colspan="3">1. ~ 6. (현행과 같음)</td></tr>
<tr><td>건강증진과</td><td>1. 서울시 지정 금연구역</td><td>o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」 제33조제2항 제4호</td><td>구청장</td></tr>
</table></td></tr>
<tr><td>수정의견</td><td>▢ 시민건강국
<table>
<tr><td>주관부서</td><td>사 무 명</td><td>근거법령</td><td>수임기관</td></tr>
<tr><td>보건의료정책과</td><td colspan="3">1. ~ 6. (현행과 같음)</td></tr>
<tr><td>건강증진과</td><td><u>1. 서울시 지정 금연구역(「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」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보조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관리가 위임된 도시공원은 제외함)</u></td><td>o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」 제33조제2항 제4호</td><td>구청장</td></tr>
</table></td></tr>
</table>

○ 한편, 사무위임에 따른 비용 분담 문제는 위임되는 금연구역이 소규모(광장 3개소, 버스정류장 392개소)라는 점에서 별도의 예산 지원없이 자치구의 기존 단속인력을 활용하기로 협의되었음.

- 자치구 의견 조회 결과(2021.9.15.~9.17)에 따르면, 25개 자치구 모두 사무위임에 찬성하였으나, 종로구는 예산배정 계획의 미비, 자치구 간 경계에 위치한 청계광장 관할구의 불명확함을 지적하였음.

※ 청계광장은 종로구와 중구 간의 협의에 따라 중구가 관할하기로 결정되었음.

○ 하지만, 「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」는 사무위임시 예산 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[2], 사무위임에 따른 예산 소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액일지라도 서울시가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함.

다.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재분류

○ 개정안은 자치구에 대한 위임사무 중 2021년 6월에 실시된 조직개편 이후 부서 간 업무분장 사항이 조정된 것을 반영하였음.

○ 지난 조직개편에서 ‘택시물류과’는 ‘택시정책과’로 명칭을 바꾸면서 물류행정에 관한 사무를 신설된 ‘물류정책과’로 이관하였고, 개정안은 화물차 관련 사무의 추가 이관을 반영해 주관부서를 ‘택시정책과’에서 ‘물류정책과’로 변경하였음.

- 변경되는 사무는 ‘자가용화물차의 사용신고·임대허가·임대자가용화물차 반환신고·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처분’, ‘화물차운송사업 영업소 허가·허가증 및 게시 등’, ‘화물차운송주선사업 영업소 허가·허가증 교부 및 게시’ 등임.

---

2)「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」제2조(위임의 기준 등) ② 시장은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여부를 점검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○ 또한, ‘도시개발사업구역 내의 행위허가’, ‘「물환경보전법」에 따른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조사’의 주관부서를 ‘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’에서 ‘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과’, ‘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’에서 같은 국 ‘물순환정책과’로 각각 변경하였음.

<신구 조문대비표>

<table>
<tr><th>현 행</th><th>개 정 안</th></tr>
<tr><td>[별표]
사무위임 조례 위임사무(제5조 관련)

▢ 도시계획국
<table><tr><th>주관부서</th><th>사 무 명</th><th>근거법령</th><th>수임기관</th></tr><tr><td><u>도시계획과</u></td><td><u>1.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의 행위허가</u></td><td><u>o「도시개발법」제9조제5항</u></td><td><u>구청장</u></td></tr></table>
<u>< 신 설 ></u>

▢ 물순환안전국
<table><tr><th>주관부서</th><th>사 무 명</th><th>근거법령</th><th>수임기관</th></tr><tr><td rowspan="2">물재생계획과</td><td colspan="3">1. (생 략)</td></tr><tr><td><u>2. 물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사무</u>

<u>가.「물환경보전법」제23조에 따른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조사</u></td><td><u>o「물환경보전법」제23조(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호)</u></td><td><u>구청장</u></td></tr></table></td><td>[별표]
사무위임 조례 위임사무(제5조 관련)

▢ 도시계획국
<table><tr><th>주관부서</th><th>사 무 명</th><th>근거법령</th><th>수임기관</th></tr><tr><td colspan="4"><u>< 삭 제 ></u></td></tr></table>
<u>▢ 균형발전본부</u>
<table><tr><th><u>주관부서</u></th><th><u>사 무 명</u></th><th><u>근거법령</u></th><th><u>수임기관</u></th></tr><tr><td><u>도시활성화과</u></td><td><u>1.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의 행위허가</u></td><td><u>o「도시개발법」 제9조제5항</u></td><td><u>구청장</u></td></tr></table>
▢ 물순환안전국
<table><tr><th>주관부서</th><th>사 무 명</th><th>근거법령</th><th>수임기관</th></tr><tr><td rowspan="2">물재생계획과</td><td colspan="3">1. (현행과 같음)</td></tr><tr><td colspan="3"><u>< 삭 제 ></u>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h>현 행</th><th>개 정 안</th></tr>
<tr><td>
<table>
<tr><th>주관
부서</th><th>사 무 명</th><th>근거법령</th><th>수임기관</th></tr>
<tr><td colspan="4">< 신 설 ></td></tr>
</table>
</td><td>
<table>
<tr><th>주관
부서</th><th>사 무 명</th><th>근거법령</th><th>수임기관</th></tr>
<tr><td><u>물순환
정책과</u></td><td><u>1. 물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사무</u>

<u>가. 「물환경보전법」 제23조에 따른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조사</u></td><td>

<u>ㅇ「물환경보전법」 제23조</u></td><td>

<u>구청장</u>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/table>

○ 사무의 주관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개정안은 자치구 위임사항에 변동이 없어 내용상으로 문제는 없으나, 조직 개편이 작년 6월에 실시된 점을 감안하면 후속 입법 조치가 다소 지연된 측면이 있음.

- 조직 개편 변경사항을 포함해 제출한(2021.8) 「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」에서 물류사무의 주관부서 변경사항(택시물류과→물류정책과)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바, 후속 입법조치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됨.

담당 조사관	연락처
김성만	2180-8055